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3)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(안 제5조 ~ 제6조)
- 4)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(안 제7조)
- 5)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, 운영, 해촉 등(안 제8조 ~ 제11조)
- 6) 표창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제정안은 금천구민의 지역문화의 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문화 장려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생활문화”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함

나)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(안 제5조 ~ 제6조)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
-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위임조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

다)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(안 제7조)

-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명시함

3) 검토 의견

- 생활문화는 주민이 거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시책 마련이 요구됨. 금천구는 마을활력소 어울샘을 통하여 동아리 지원, 생활예술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제정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